## 제365회국회 (임시회)

#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제 2 호

일 시 2018년12월27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
-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

(18시38분 개의)

○**위원장 여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2 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가 되어 오늘 법률안의 처리를 위 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률안 상정에 앞서 국회법 제59조 단서 에 따라 의사일정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여상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법률 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간사위원 간 협의가 되어 오 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 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 노동위원장 제출)
-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위원장 여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 항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문한 의사일정 제1항 산업안전보 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 법의 보호 대상 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도금작업 등 유해・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의 개념과 관 련하여서는 향후 이 법의 집행 및 해석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과 지 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청년고용의무 현황, 경영실 적 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 및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의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체 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 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상규**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장관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첫째로 눈에 띄는 것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이렇게 법 조항이 바뀌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정의가 없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다른 정의는 두지 않았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거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 지금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든지 또는 배달종사자라든지 가맹사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개정법률안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 등의 보호를 위한 그런 조항도 두었습니다.

다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그 표현은 용어 그대로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이 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은 향후에 새로 운 노무제공 관계가 드러났을 경우에 보호 대상 확장성을 위해서 그렇게 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별 조문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 등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장관 말씀 듣고 앞으로 이제 어떤 형태든 '나 노무 제공했다'…… 배달종사자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용어를 이렇게 바꾸었다고 그랬는데 이외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노무제공자로 해 갖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야 된다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러니까 그런 부 분······

○이완영 위원 그게 이 법체계의 명료성이, 명확성이 떨어진다 이것을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법적 용어 정의도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해당하 는 그 목적에 대한 규정이고요. 목적에서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완영 위원** 아니, 어쨌거나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거지요, 이 목적을 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렇지만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들에 대해서는 노 무를 제공하는 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 조문에서 그 개별 조문에 해당하 는 용어의 개념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게 할 수 있 습니다.

○이완영 위원 도급의 정의는 어떻게 봐요? 지금 노동부에서 또 경제부처에서 도급의 정의가 아주 달라 가지고 늘 불명확하게, 지금 도급의 정의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요, 여기에서 말하는 도급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민법에 도급의 개념이 있습니다만 민법의 도급의 경우에는 일의 완성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노동관계 영역에서 도급은 민법의 개념인 일의 완성의 범위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TX 고객서비스 제공업무 도급 같은 경우도……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넓힌다는 게 민법상 도급 개념과는 다르다 이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시간을 더 넣어 주세요, 위원장 님.

○위원장 여상규 예, 더 드리세요.

○이완영 위원 민법상 도급 개념하고는 다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이완영 위원**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확대된 개 념으로 쓴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현행법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도급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서 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그 정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도급에 대한 정의규정을 민법상보다는 더 확대해서 이 법에서 적용을 했 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랬을 때 민법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법제처하고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협의도 하고 법제처에서 법리검 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 규정을 두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혼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 지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것은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유 해작업 도급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 은, 납, 카드뮴과 같은 치유가 불가능하고 발암성 이나 생식독성물질 관련 작업에 대해서만 아주 한정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모든 도급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 내도급만 한정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리고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는 도급을 또 허용하는 예외조항도 두고 있 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완영 위원** 그리고 52조에 보면 '급박한 위 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 고……'이렇게 법 조항도 '급박한 위험'으로 되 어 있지요?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 **○이완영 위원** 맞습니까?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맞습니다.
- ○**이완영 위원** '급박한 위험' 하는 게 매우 주관 적인 용어 아닙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이 법이 와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도 그런 검토는 안 했지 요, 법 자구사항? 급박하다는 게 하위 법령에서 급박하다는 것을 규정을 한다는 겁니까?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 이 조항은 현 행법에도 있는 조항 그대로고요. 저희가 수정하 지는 않았습니다.
- ○**이완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 왔어요? 현행법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해 왔냐고요?
-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산재 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작업중지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 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 을 해 왔습니다.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이런 것 이 설치되지 않아서 추락사고 우려가 현저히 높 은 경우라든가 자재가 부적합하게 설치돼서 비 계, 거푸집, 동바리 이런 것들이 붕괴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토사나 구축물, 공작물들이 변 형되거나 이래서 붕괴사고가 바로 임박한 경우 등에만 저희들이 한정적으로 정해 왔습니다.

○**이완영 위원** 여기는 붕괴만 있는 건 아니잖아 요. 건설에 한정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붕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현행법은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또 조치를 하도록 요청 하는 거고 이거는 작업을 중지하는 것, 심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근로자가 막연하게 주관적으로 판 단해서 전체 작업이 중지될 수 있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현행 법도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보고하라고 되어 있 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보고에서 이제는 완전히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지금 강 하게 도입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급박한 상황이 라는 것은 명쾌해야 된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중지 를 한 경우에 현재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개정안도……

○**이완영 위원** 국장님, 말귀를 못 알아듣네. 장관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무슨 말씀 하시는 지는 저희가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의 규정이 약간 모호합니다. 도 리어 이것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 중지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 놓 고 그럴 때에는 보고하라라는 형태의 규정을 갖 고 있어서 새로운 개정법에서는 그 부분에 '대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떼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법은 아주 경미한 조치예요, 해당 근로자가. 상급자한테 보고하는 정도고, 이거는 해당 근로 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게 건설산업에 한한 얘기가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런데 현행법의 한 규정에 있는 문구를 두 항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 합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지요. 강해졌지요. 근로자의 권리가 아주 강해진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현행도 차이가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도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개정안에서도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문은 구분하였습니다만 그 문구는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해가 됐고요.

63조, 65조 4항은 구체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도급인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저장탱크 등으로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라항입니다, 라항.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몇 조 말씀하시는…… ○이완영 위원 63조, 65조 4항.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63조와 65조 4항.

○이완영 위원 원청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은 아무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것은 어떤 유해한 작업이 있는 경우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유해한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수급인에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계속 안주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사고들이 생겨서 정보를받을 때까지 그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는, 그것을 허용해 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완영 위원** 전문위원 한번 나와 보세요.

도급이라는 정의를 이 법에서 지금 내놓고 있 거든요?

○전문위원 이문한 예.

○**이완영 위원** 이거는 민법의 도급하고는 아주 다르게 적용되지요?

○전문위원 이문한 좀 더 포괄적인, 더 넓은 개

념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법하고 다르면 산안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나요? ○전문위원 이문한 일단 산안법 자체에서 특별 하게…… 필요성에 따라서는 범위를 법률마다 약간 좀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산안법 자체에서 도급의 개념을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관계 해석에 있어서 도급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툴 때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들을 갖다가 해석하는 이론을 전개하다 보면이쪽 도급과 이쪽 도급의 개념들에서 약간의…… ○이완영 위원 그러면 민법 조항을 그대로 갖다쓰는 것을 왜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이렇게 정했습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노동관계 영역에서는 노무도급이 도급이냐? 노무도급, 그러니까 노동력만 쓰는 도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민법상 도급에 해당하느냐라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장해 가지고 담기 위해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었습니다.

O이완영 위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용어도 조금 불명확하고, 도급에 대한 용어 정의를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고 처리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 법의 목적조항에,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는 분이라는 그러한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법의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그 용어가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급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법의 목적에 따라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십사……

○이완영 위원 장관님,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목적조항 외에 2조(정의)에도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했다가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꾸어 놨어요. 목적조항에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래서 이 조항에 특

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배달종사자나 가맹사업자에 대한 산업안전규정을 새로이 추가를 했고요. 이 분들에 대한 것을 포괄하기 위한 용어로 이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노무를 제공하 는 자가 아니라 특고법에 의한 특수형태 근로자 또 배달종사자는 현행법에 전혀 없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열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노무를 제공하 는 자로 바꾸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동부 행정의 대상이 근로자란 말 이에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위원 님, 환노위에서도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어떠어 떠한 자로 하자라는 이런 논의를 하셨습니다. 근 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특수형태종사근로자 그다 음에 배달종사자, 이런 식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 자라고 하셨다가……

**○이완영 위원** 용어 정의를 하자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그렇게 하셨다가 그것보다는 그냥 목적…… 그런 식으로 용어 정의를 하다 보면 나중에 한 조항 한 조항씩 늘어날 때마다 또 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1안은 목적에만 놔두 고 나중에 혹시나 그런, 가사사용인이라든가 이 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때는 정의조항에 넣지 말고 바로 본조항에서 보호조항을 집어넣자, 이런 취지로 목적에만 그 런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 목적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니까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목적 과 산업재해, 그 두 가지입니다.

○**이완영 위원** 산업재해 정의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군데 지금 바꿔놨잖아요,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두 군데입니다. 목적하고 산업재해 정의하고 두 군데에만 들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10호에도 있어요. '그 밖에 노무 를 제공하는 자', 10호.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

또 있어요. 이게 몇 조입니까. 61조에도 있네 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을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증진', 다 바꿔놨는데 무슨 목적조항에만 있 다고 그래요?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본조 를 다시, 조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완영 위원** 61조.

○송기헌 위원 61조에 없는데요?

**○이완영 위원** 없어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예, 61조는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 예요? 61조에는 안 바꿔놨어요? 목적조항에 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61조는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로 돼 있어서, 혹 시 조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이완영 위원** 아니아니, 61조 산업재해 예방시 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산업 재해 예방시설?

○**이완영 위원** 아니야? 그러면 이 자료에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적하고 지금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지금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를 제공하 는 자가 들어간 사항이……

**○이완영 위원** 아, 11조?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4조 1항.

**○이완영 위원** 11조?

지금 그러면 1조하고 그다음에 2조 1호하고.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2조 1호. 4조 1항 8호입니다. 4조 1항 8호에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한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인데 이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11조는 뭐예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11조 3호도 고용노동부장관, 그러니까 정부에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건강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한 시 설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 정부의 의 무를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마이크 넣어 주세요.

#### ○위원장 여상규 예.

○이완영 위원 이 중대한 법안의 마련, 또 고 김영균 근로자로 인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 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을 충분히 알고 또 우 리 법사위에는 지금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그래서 제가 법체계·자구상의 문제만 보는 겁니다. 내용을 가지고는 제가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따로 있어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환노위에서도 그게 논의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됐고, 민법상 도급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런 지적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상규 송기헌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질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법을 적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돼 있더라도 법 자체를 적용할 때 모호함 때문에 법에 오해가 생길 여지는 없다 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각각 조문에는 조문대로 다 특정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개념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이 개념 때문에 오해가 될 소지 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도급의 문제도 현실에 있는 도급 현황, 도급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현황 그대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이것 때문에 어떤 혼동이 생기거나 그럴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

른 법에도 비슷비슷하게 각 법마다 똑같은 단어를 좀 확장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축소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도 근로자라는 용어를 같이 쓰지만 정의를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이 부분 이 환노위에서 논의될 때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충분히 돼서 여기까지 올라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충분히 여러 가지 논의된 건인 만큼 법사위에서 저희들이 의결해서 따라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청년고용촉진법이 법사위에 올라 왔습니다만 여야 간 합의를 할 때 유치원 3법과 연계해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유치원 3법의 쟁점이 되었던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바와달리 지금 번복을 하고 유치원 3법 관련 내용을바꾸겠다고 갑자기 저희 당에 통보를 해 오는 바람에 패키지로 합의되었던 부분이 사실상 파기되는 상황 직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이것은 여야가 완전히 합의될 때까지 보류를 시켜 달라는 게 저희 당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고 각 당의 입장이 어떤 건지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고 토론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위원장님께서 정중하게 정회를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여상규 여야 간에 합의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법은 우리 법사위에서 일단 심의가시작된 이상 이 법 자체를 심의하는 것이 옳다는생각이 들지만 이완영 위원님이 노동부에 다년간근무를 하시고 이 분야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서 발언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죽지켜봤는데 역시 제가 봐도 근로기준법과는 다른근로자 개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런 개념을도입함으로써, 물론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특수고용노동자나 배달종사자 등 신종 플랫폼 노동유형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는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앞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될 여 지가 있고 근로자 개념이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내포돼 있는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규정상.

그리고 도급도 민법상 도급과는 별개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결국 취지는, 마찬가지로 이런 민 법상 도급과는 다른 개념의 도급을 도입할 필요 가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역시 민법상 도급 개념이 확대될 그런 여지가 있 어서 이 법의 적용과 관련된 소위 법체계상의 문 제점, 이런 것들을 더 검토하고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침 또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을 파기 하는 듯한 그런 기류가 지금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저희 여야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 좀 정회를 할 테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여상규 예, 말씀하세요.
- ○**표창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의 설명에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됐는데요, 문제는 조금 전에 고 김용균 씨 모친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국 회에서 모처럼 김용균법이 여야 합의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그러한 합의에 따라 서 고인의 모친께서 겪으셨던 그 감정의 느낌이 라든지 그것이 국민께 전파된 이런 상황들을 우 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 은 지금 정회 사유를 말씀하실 때 이 법안 내용 의 문제보다는 우선 그러한 여야 간 합의 형식을 존중하고 이 사고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여망을 받아들이되 잠시 조금 더 검토를 하자라는 마무 리를 해 주셔야만 저는…… 지금 정회가 혹시라 도 언론에 나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완영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또 안 됐다' 이렇게 돼 버리면 또 이완영 위원님이 타 깃이 돼서 많은 비판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그러한 문제 제기를 특 정 위원이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검토하기 위 해서 정회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노위 합의정신을 받아들여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현재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라는 그런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예, 충분히……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도읍 위원** 표창원 위원님 말씀도 잘 새겨듣 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사위입니다. 내용도 따져야 되고 체계도 따져야 되고 자구도 타 법률 과 헌법에 적합한지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 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고 김용균 씨 같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생각 은 누구보다 강하지요.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 까이 청춘을 바친 분입니다, 현장에 대해서 누구 보다 잘 알고.

그런데 법체계상 안 맞다는 지적을 하는 것 아 닙니까? 그것을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마치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 시면 법사위에서 누가 소신껏 발언을 합니까? 여 기에 김용균 씨 같은 그런 참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위원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법사위 행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아청법 통과할 때도 정말 법 체계상 안 맞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나 와서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 달 라…… 안 나오시잖아요, 발의만 해 놓고, 던져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는 법논리 그다음에 법체계 · 자구 이런 것을 그래도 안 따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힘든 과정을 겪는 과정 에서 표창원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사 위에서 누가 발언을 하고…… 그러면 오는 대로 다 받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 조문이 몇 개입니까? 이문 한 전문위원, 개정되는 조문이 총 몇 개지요?

○전문위원 이문한 170개 이상 됩니다.

○김도읍 위원 170개를 지금 바로 던져 가지고 숙려기간도 안 거치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겪 으면서 여기에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통 과시켜라? 우리 법사위원 스스로가 우리의 책임 을 방기하자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표창원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완영 위원이 여론의 질 타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잖아요, 지 금.

○**표창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상규 조금만 좀……

- ○표창원 위원 아니, 제가 언급됐기 때문에……
- **○위원장 여상규** 예, 잠깐 좀 기다리시고요……
- ○**이완영 위원** 언급은 내가 언급됐지.
- ○**표창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언급됐지 않습 니까?
- ○김도읍 위원 언급을 먼저 하셨잖아요.
- ○위원장 여상규 조금 더 마음을 가라앉히십시 ○

우선 송기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김도읍 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위원장 여상규** 예, 다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기헌 위원** 정회하시기 전에 우리 또 서로 간에 오해는 풀어야 되니까……

우리 표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취지를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또 밖에서 제삼자가 볼 때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 지 않은가 하는 우려에서 한다는 말씀을……

- ○**김도읍 위원** 아니, 밖에서 오해를 하든 말든 본인이 그것을 환기시킬 이유가 없지요.
- ○**송기헌 위원** 아니, 우려하는 것은 또 법사위 전체에서는……
- ○**표창원 위원** 아니, 왜 제 의도를 그렇게 마음 대로 단정을 하십니까, 김도읍 위원님? 심령술사 세요?
- ○**송기헌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시고, 이 정도에 위원장님이 정회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여상규** 알겠습니다.
- ○**김도읍 위원** 여기는 감성팔이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 ○**표창원 위원** 어디에서 감성팔이라는 말을 끄집어냅니까, 지금!
- ○**위원장 여상규** 됐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 ○김도읍 위원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 ○위원장 여상규 제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시 면 제지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법체계상의 문제가 없지 않고 또 자구상의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여야 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켜서 다 시는 김용균 씨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 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는 저희가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종 합적으로 저희가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잠깐……

- ○**이완영 위원** 저 신상발언은 해야 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만하시지요.
- ○위원장 여상규 간단하게 하십시오.
- ○**이완영 위원** 제가 신상발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름을 여당 위원이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법체계·자구를 지적하면서 마무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금 이런 비참한 우리 근로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전문위원안이 지금 여러분들 위원님한테 다놓아져 있어요. 전문위원 지적 전에 제가 먼저지적한 게 지금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보고 지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두 가지, 법 적용 대상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 제가 대안까지 제시했잖아요,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하자, 민법상 도급으로 정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면 저는 지금 금방 합의할 수 있어요, 이완영 위원 개인 의견은. 그런데 왜 이완영 위원이 발목을 잡는다는 듯이 밖에 있는 분을 언급하고, 이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제가 분명히 국민 여러분들께도 정말 진짜 진심어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체계상 얘기를 하는 거다, 자구상 얘기를 하는 거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여상규 잘 알겠습니다.
- ○**송기헌 위원** 표창원 위원한테도 발언 기회를 주셔야지요, 똑같이.
- ○**위원장 여상규** 그러면 표창원 위원님, 간략하 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표창원 위원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이 너무나 상충되기 때문에…… 한 분은 체계·자구 말씀을 하시고 한 분은 합의 파기 말씀을 하십니다. 듣기에는 원래의 이유는 합의 파기인데 그것을 그렇게 말하자니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니까 체계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저희가 법사위에서 이제까지 법안 통과를 하면서 다양한 법안들을 다양한 이유로 사실 저희들이 심사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지나치게 많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구·체 계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삼아서 2소위에 회부 시킨 사례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오늘 이 법안은 이미 환노위에서 다 합의가 됐고 여야 원내에서 합의가 된 것 아 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다 그렇게 알고 여 기에 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완영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이미 다 검토했고 고 지받았고 알고 있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 고 충분히 납득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 시고 수긍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 고 견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겠지만 그런 장시간을 보내고 나서 결과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납득을 해야 하며 또 정회 사유에 대해 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왜 그런 감정적이고 공격 의 언사를 사용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셔야 되는 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추 가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의도는 전혀 없고요. 다만 정회를 하는 사유를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 에 잘 정리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정회 이후에 오늘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여상규** 잘 알겠습니다.
-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여상규 아니, 됐습니다.
- ○**김도읍 위원** 주십시오, 주십시오!
- ○위원장 여상규 어차피 정회할 텐데……
- ○김도읍 위원 아니, 아닙니다. 정정을 해야 됩 니다. 저희들이 속기록에 남겨야만 나중에 우리 가 판단하고……
- ○위원장 여상규 아주 짧게 말씀하시기 바랍니 다.
- ○김도읍 위원 어떻게 김도읍 위원이 한 이야기 하고 이완영 위원이 한 이야기가 상충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분명하게 위원장님께 여야 간에 패키지로 합의된 사항인데 유치원 3법 관련해서 바른미래 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깨기를 시도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완전한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잠시 정회를 해 달라, 간사 간에 각 당의 상황을 확인하겠다라는 것이 제 정회 요구 사항이었습니 다. 그러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시기 위 해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표창원 위원께서 말 씀하시면서 이완영 위원이 마치 어떻다라는 발언

을 하시기에 제가 우리 동료 위원을 대신해서 간 사로서 표창원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 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회 요구한 것하고 제가 반론 제기한 것하고는 다른 내용이 지요.

- ○이완영 위원 나는 체계를 따로 얘기한 거지.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이완영 위원은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여야 간의 합의 파기 과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상충되 는 겁니까?
- ○**송기헌 위원** 이제 그만하시고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여상규 그만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 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회의중지) (2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도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야 간 합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겸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대체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김도읍** 예. 송기헌 간사님.
- ○**송기헌 위원** 정회하기 전에 이완영 위원님께 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서 중간에 정회하는 과정에서 이완영 위원님하고 협의가 좀 된 부분이 있지요?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 ○**송기헌 위원** 장관께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완영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도급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이완영 위원님 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조제6호 정의규정 에서 "도급, 위임 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도 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로 바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1 조(목적) 규정, 제2조제1호 산업재해의 정의규정, 제4조제1항제9호 정부의 책무, 제11조제3호 산재 예방시설 설치 등에서만 규정되어 있고 개별규정 에서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배달중개자만을 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법률의 개정 없이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법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도록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렇게 된 부분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충분히, 이완영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부분이 해소가 상당 부분 됐다 이렇게 보인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그러면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쭙겠는데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정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고요. 그렇게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하게 되면 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라든지 배달중개자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이완영 위원님 발언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장관님 말씀 듣고 도급에 대한 개념은 다소 민법하고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완·정리됐다고 제가 생각을 합 니다.

다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개별 사업장의 직접 규제 대상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 다만 정부의 책무로 보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책무를 가진다 이런 설명 아니에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다면 가장 애매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노무제공자까지 포함할 거냐, 정부가.

○**위원장대리 김도읍** 조금 더 줘요. 새로 줘야지.

○이완영 위원 제일 핵심은, 이것 임금 없이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냐, 그래서 '임금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뭐 괄호로 이런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런데 이 산업안전보 건법에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한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사업주한테 의무가 가는 부분에 대 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이 되고 요

다만 이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한테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임에는 누구도 다 인정을 합니다. 제가 앞서 정회 전에 말씀드린 것도 우리 법사위에서 해야 될 고유의 일, 법체계·자구에 관한 얘기 그리고 타 법과 상충된 것을 보는 게 법사위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제가 지적을 했고 또 다소 보완은 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나 여당 위원들이 오해를 했듯이 이 법을 늦추려는 의도로 봐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저도 노동부 출신인 만큼 앞으로 고김용균 근로자처럼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이 법이통과함으로 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저도 다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수정은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각 기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법사위 직원, 속기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산회)

## ○출석 위원(16인)

박 주 민 금 태 섭 김 도 읍 김 종 민 박 지 원 백 혜 련 송 기 헌 여 상 규 오신환 이완영 이 춘 석 장 제 원 정 갑 윤 조 응 천 채 이 배 표 창 원

##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상 수 전 전 문 위 원 정 연 호 전 문 위 원 강 병 훈 전 문 위 원 0 문 한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 재 관  $\circ$ 갑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 영 만